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
 전 집 : 문화공보관 심재섭
 전 화 75-7834
 인 처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
 전 화 75-6090

제 752 호
 1980. 2.14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- 제 1404 호 :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 3
 제 1405 호 :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칙 14

◎ 훈 령

- 제 520 호 :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관한규정

제 1404 호	제 1405 호	제 520 호
허가	공급	연구
1404	1405	520

◎ 고 시

- 제 4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 승인 17
 제 47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 실시계획인가 17
 제 4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실시계획인가 18
 제 49 호 :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지적 승인 19

<이 면 계 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51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및지적승인 20

◎ 공 고

제 40 호 :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21

제 41 호 : K·D 표시정지처분공고 21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國
1980년 2월 14 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4 호
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양곡관리법 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(이하 "령"이라한다)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한다) 에게 위임된 갑종 가공업허가 (정부양곡도정업 및 대규모 제분업과 제조업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에 관하여 영별표 2 의 시설기준과 동법시행규칙 (이하 "규칙"이라한다) 제 11 조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시설기준및설치장소) ① 영제 14 조제 3 항및 영별표 2 규정에 의한 갑종가공업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별표 1 과 같이한다. ② 제 1 항의 갑종가공업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은 그 주된용도

가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. 이경우 시장은 민집주택 기타 시설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허가신청등) ① 갑종가공업허가에 있어서 그 첨부서류, 허가여부, 결정기간, 시설공사연기, 허가증교부, 수수료점부등에 대하여는 규칙 제 6 조 및 제 13 조 (별표 2) 의 규정에 의한다.

② 제 1 항의 허가신청서는 별지제 1 호 서식에 의하고 그 첨부서류중 사업계획서와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서는 별지 제 2 호 내지 제 3 호서식에 의한다.

제 4 조 (양도, 변경등) ① 갑종가공업의 양도, 임대또는변질 (이설, 증설, 개설, 축소, 합설) 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 그 첨부서류, 시설공사 완료신고변경제한등에 대하여는 규칙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다.

② 제 1 항의 승인신청서는 별지제 4 호 서식에 의하고 그 첨부서류중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서는 별지제 3 호 서식에 의한다.

제 5 조 (휴업, 폐업등의신고) 갑종가공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규칙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15 일 이내에 신고서 (별지제 5 호서식) 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허가증갱신, 대장비치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.

②갑종가공업자는 일별취급량, 재고량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갑종가공업허가대장 (별지 제 6 호서식) 및 갑종가공업허가증교부대장 (별지 제 7 호서식) 을 비치하고, 각종 변동사항을 수시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영업정지, 위소및시설점검등)

①법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위소처분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.

②시장은 매년 4 월과 10 월 2 회에 걸쳐 갑종가공업소의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점검할 수 있다.

③제 2 항의점검결과법제 23 조 내지 제 27 조 위반업소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별표 2 의 영업정지 및 위소해당업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내부위임및업무감독) ①이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한다.

②구청장은 내부위임된 각종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매분기마다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

청장의 각종행정처분에 대하여 1년 1 회 이상의 사무감사를 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조 (시행규칙)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예규폐지) 이 조례 시행에 따라 "서울특별시소규모갑종가공업허가사두처리요령" (1977.7.1자 예규 360 호) 은 이를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승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갑종가공업은 이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이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이설, 증설, 개설 및 합설시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④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 별표 1 의 동력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갑종가공업소에 대하여 시장은 그 동력시설의 교체 예정일을 신고받아 이를 조정 통고한 후, 그 통고한 교체 예정일 안에 이를 교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.

(구청장에 내부 위임)

(별표 1)

소규모도정업 및 재분업 시설 기준

구 분		시행령별표 2 (최저시설기준)	조례상의 시설기준 보완
도 정 업	정미시설	- 원동기 : 10 마력 - 원료정선장치 : 원료정선흔들체 또는 원료정선풍구 1 대 석발풍구, 1 대 - 제현장치 : 현미기 1 대 왕겨풍구 1 대 석발기 (석발풍구) 1 대 또는 만석 1 조 (매로된것은 4 조) - 정미장치 : 정미기 1 대	- 원동기 : 최고한도 25 마력 전동기 : 10 마력 내지 15 마력 (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의 기준적용) - 건물 : 40.5 m² (15 평) 이상 - 대지 : 165 m² (50 평) 이상
	정맥시설	- 원동기 : 10 마력 - 원료정선장치 : 석발기 1 대 - 정맥장치 : 재품정선풍구 1 대 정맥기 1 대	상 동
재분업		- 원동기 : 5 마력 (전동기는 3 마력) - 정선장치 : 원료정선시설 1 식 - 분쇄기 : 1 대 - 제 : 1 대	- 원동기의 설치 불가 (건축법 시행령 제 142 조에 저촉) - 전동기 : 3 마력 내지 4.5 마력 - 건평 : 30 m² (9.09 평) 이상
주		1. 정미시설과 정맥시설에 있어서 원동기와 원료정선시설은 이를 겸용할 수 있다. (시행령별표 2) 2. 위 1 의 시설은 이를 소규모 재분업에 겸용할 수 있다. (조례상의 보완)	

(별표 2)

영 업 정 지 및 위 소 기 준

처분구분	위 반 내 용
가. 영업 정지 1월	1. 보고를 3회이상 불이행한 때 2. 승인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임대한 때 3. 필요한 장부의 기재에 관한 명령을 2회이상 불이행한 때 4. 신고없이 휴업 또는 재개업하여 1월이상 경과한 때 5. 시설의 확인점검에 의한 시정지시를 기간내에 불이행한 때 6. 기타 행정지시 사항을 위반한 때
나. 영업 정지 2월	1. 법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, 법제 15 조의 2 또는 영 제 17 조의 2 제 3 호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. 승인받지 아니하고 양도, 이전 또는 시설을 변경한 때 3. "가"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고 3월이내에 다시 "가"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
다. 허가 취소	1. "나"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고 3월이내에 다시 "나"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. 산종(山種) 공업의 폐지신고를 그 폐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3. 휴업한 자가 휴업후 6월이상인 경과하여도 재개업하지 아니할 때

(별지제 1 호서식)

양 곡 가 공 업 허 가 신 청 서

신 청 인	성 명			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		전 화 번 호		
설 치 공 장	설치장소							
	업 채 명					업 채 구 분		
	업 종					부 지 면 적	평	
전 물	전 물 명	건물구조	동수	건평	비 고			
	공 장				수 용 능 력			/
	창 고							
가 공 능 력		정 미	정 맥	압 맥	제 분	제 조	비 고	
(1 일 시 간 기 준)	제 품	/	/	/	/	/		
	원 료							
동 력 및 기 계 시 설 내 역	사 설 명	종 별	형 식	규 격	대 수	마 력	기 타 부 대 시 설	
착 공 · 준 공 년 월 일								
기 타 (참 고) 사 항								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 허가들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신청인 (인)								

(별지제 2 호서식)

사 업 계 획 서

신청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	전화번호			
설치공장	설치장소							
	업체명				업체구분			
	업종				부지면적	평		
건물	건물명	건물구조	층수	전평	비고			
	공장				수용능력 /			
	창고							
설치자급								
주택현황		호수	호	농가	호	비농가	호	인구수명
기설공장유무						잔적		
사업내용		곡종별 연평균생산량			예정량		생산능력	
					1일가공	연간가공	일평균	연간평균
기타 참고 사항								

(별지제 4 호시식) 양곡가공시설(명의변경, 시설변경, 장소이전) 승인신청서
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전화번호		
	업체명		허가번호		허가일자	
변경사항	내 용	변 경 전			변 경 후	

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
승인신청합니다.

19 . . .

신청인

(인)

귀 하

(별지제 5 호서식)

양곡가공업 휴업 재개업 폐지 신고서

신 고 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	허가번호		허가년월일	
	업종			
	업체명			

(휴업, 재개업,
폐업) 이유

휴업기간

재개업일
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
신고합니다.

19

신 고 인

①

귀 하

※ 폐지일 때에는 허가증 첨부 수수료 없음.

22-12 제 752 호 시

보 1980. 2.14.

(별지제 6 호서식)

양곡가공업허가 (등록) 대장

조사년월일

조사지적성명

규 모 구 분				허 가 번 호							
업 태 별				공장소재지							
설치년월일				상 호							
허가년월일				정명자성명							
변 경 상 호			변경정영자	변경년월일							
허가번호	허가번호	성 명									
변 경 상 호			변경정영자	변경년월일							
허가번호	허가번호	성 명									
주 요 기 제 시 설 상 황	증		변	형	식	규	격	대	수	비	고
지 요	공장부지		평	전평		평		지붕			호
								벽			농가호수
	연간원료 취급량	정 미	정 맥	제 분		1 일 10 시간 생산능력	정 미	정 맥	제 분		
		가마	가마	소 맥	미 곡		가마	가마	소 맥	미 곡	
		가마	가마	가마	가마			가마	가마	가마	가마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[인]
1980년 2월 14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05 호

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다음
(별표 1)

과 같이 개정한다.
(별표 1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1980년
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1980년 3월에 검침
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
인상 부분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
한다.

1 개 월 기 본 요 금		조 과 사 용 요 금	
기 본 량	기 본 요 금	사 용 량 구 분	입방메타(㎥) 당 단 가
10 ㎥ 까지	2,400 원	기준예정사용량 25 ㎥ 까지 기준예정초과 사용량	240 원 300 원

훈 령

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0년 2월 14일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[인]

◎ 서울특별시훈령 제 520 호

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관한규정

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

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
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수당
지급조례 제 3 조 및 서울특별시 잡
급직의사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
임상연구서 제출 및 임상연구비 지
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 상) 임상연구비는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과 잡급직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임상연구의 과제별로 지급한다 .

제 3 조 (임상연구서의 제출)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.

- 1 . 연구과제
- 2 . 연구내용
- 3 . 연구의 완성예정 년월일
- 4 . 연구비의 소요명세
- 5 . 연구참가자가있을때에는 그명단
- 6 . 기타 참고사항

②병원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.

제 4 조 (지급의 한계) ①연구비의 과제별 지급 한도액을 150 만원으로 한다 .

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3 인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연구과제마다 300 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.

③동일인에게는 같은 해에 2 개이상

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다 . 다만 , 전문의의 경우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 개 과제씩 따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2 개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.

④임상연구비 국고보조를 받는 자는 국고보조 내시액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.

제 5 조 (지급방법) 연구비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되되 병원장은 연구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다 .

제 6 조 (연구비의 목적이외의 사용금지) 지급된 연구비는 당해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을 시금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.

제 7 조 (보고) 병원장은 매회계년도 종료일로 부터 1 월안에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.

부 칙

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(제 1 호서식)

임 상 연 구 계 획 서

1 . 연구과제명	
2 . 연 구 내 용	
3 . 연구완성에정년월일	19 년 월 일
4 . 연구비소요명세	
5 . 연구참가자명단	
6 . 기타참고사항	

위와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19 년 월 일

직 명

성명

인

빙 원 장 귀하

(별지제 2 호서식)

년 도 연 구 비 지 급 계 획 서

직 명	성 명	연 구 과 제	연 구 비	비 고

(별지제 3 호서식)

년 도 연 구 비 지 급 상 황

직 명	성 명	연 구 과 제	연 구 비 지 급 액	비 고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6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84호(79.5.4) 로
신설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
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
였기 도시계획법제 13 조의 규정과

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의
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
와 강동구청도시정비과 및 시민봉
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2.13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연 장	폭 원	기 점	중 점	비 고
신설	소로	3		80 m	6 m	거여동 256	거여동 225	

별첨도면표시와 같은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7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 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201호(75.12.17) 로
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제 61 호
(76.3.25)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
사업 (도로, 하수도) 에 대하여 다음
과 같이 사업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
시계획법제 25조 및 26조와 건설부고시
제 463호(79.12.10) 규정에 의거 이를
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 2과
와 강동구청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
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
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2.13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
337- 강동구중남동 361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
로, 하수도) 성내동 747- 성내교간 확
장공사

3. 사업규모

가. 교량확장

$$B = 20\text{ m} - 40\text{ m}, L = 120\text{ m}$$

나. 도로확장

$$B = 20\text{ m} - 40\text{ m}, L = 440\text{ m}$$

다. 하수도

$$D = 700\text{ mm}, L = 1,125\text{ m}$$

$$D = 800\text{ mm}, L = 285\text{ m}$$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: 79. 11. 20
~ 80. 7. 2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: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8 호 (79. 4. 24) 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8 호 (79. 6. 8) 로 지적승인된 풍납동 157 번지의 하수암거공사의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에 대하여 다

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 12. 10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 2. 13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강동구풍납동 157-2 외 7 필지

2. 사업시행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풍납동 157 하수암거공사

3. 사업시행 규모: 하수암거 $L = 420\text{ m}$
 $B = 6\text{ m}$

4. 사업시행자 주소성명: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: 79. 3. 19 ~ 79. 7. 6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: 별첨

7. 위치 및 계획평면도: 별첨 (생략)

8. 공사설계도면: 별첨 (생략)

토 지 조 서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m)	소유자	
				주 소	성명
성내동	98-15	대	479	용산구동빙고동 68-5	박 석 길
"	99-9	전	481	성내동 108-4	영 파 학 원
"	328-9	잡	61	"	"

소재지	지 번	지목	지적(㎡)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풍납동	157-2	전	105	포항시 두호동 273-2	황 봉 익
"	273-8	전	215	풍납동 225	이 찬 주
"	338-22	대	93	성내동 48-4	인병호의 2
"	237-10	전	333	압구정동 369	
"	237-4	잡	1,072	현대아파트 23 동 801 호 풍납동 225	최 경 만 이 찬 주
계	8 필지		2,839 [㎡]	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 호

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치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 제 349 호 (79.9.24)
로 변경 결정된 서울도시계획시설
(고속철도) 을 도시계획법 제 13조
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
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

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
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
에게 보입니다.

1980.2.14

서울특별시 장

○ 고속철도 (부대시설) 치적승인조서

시 설 명	위 치	폭(m)	연장(m)	면적(㎡)	비 고
하왕십리정차장	성동경천사앞	24	205	6,670	명칭변경
한대앞 "	한양대학앞	21	205	4,874	
경마장앞 "	성수1가동 656~283 앞	25	205	5,023	
성수동 "	성수2가1동 300-4 앞	27	325.40	8,908	
화양동 "	화양동 7-3 앞	17	210	4,724	
구의동 "	성동지청앞	24	210	4,360	
강변 "	구의동 매립지	21	232	4,402	
성내 "	잠실시영아파트앞	21	205.7	3,857	

시 설 명	위 치	폭 (m)	연장(m)	면적 (㎡)	비 고
잠 실 정 차 장	잠실대교앞 광장	36	205	8,673	
신 치 "	주공 2 단지앞	23	205	5,954	
대 운 동 장 정 차 장	남서울대운동장앞	65	225	14,931	
삼 성 동 "	삼성동 300-1	18	205	5,232	
삼 능 "	삼성동산 41의 51 번지앞	22	205	5,470	
역 삼 동 "	삼성동 505 번지앞	25	205	5,732	
강 남 "	서초동 4 부력앞	23	205	4,371	
교 대 앞 "	서초동 416 번지앞 (서울교육대 입구)	22	205	5,168	
서 초 동 "	서초동산 170-1 번지앞	23	205	6,617	
방 배 동 "	방배동 225 부력앞	20	205	3,910	
사 당 동 "	사당동 294 부력앞	37	205	6,109	
신 대 방 "	문창국민학교 앞	19	212	4,028	
공 단 "	독산동 1 부력앞	19	210	3,959	
신 도 립 "	신도림동 1052 앞	19	211	4,009	

발원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

변경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

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13 조
와 건설부 고시 463 호 (79.12.10)
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

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
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인에게 보입니다.

1980.2.14

서울특별시 장

○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 분	등 급	류 별	번 호	목 원	연 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 정	중	3	66	12	600	도 봉 동 273	도 봉 동 417	폐 지
변 정	대	3	142	25	600	"	"	신 설
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0 호

환지 계획 변경공람 공고

1. 영 동 제 2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아파트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,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코자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.
2.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보이고 있으며,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합니다.

1980.2.13

서울특별시장

- 환지계획변경내역 -

가. 사업명 :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
 나. 변경면적 : 500.5 평
 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도곡동 125의 37 호의 4 필 별첨도서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1 호

K 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K S (한국공업규격)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0. 2. .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 1353

허가일자 76.11.17

제조업체명 신진멜브공업 (주)

대표자 박찬언

22-22 제 752 호 시

보 1980.2.14

소재지	영등포구 가리봉동 444	처분기간	처분일로부터 3 개월이 후
품 목	수도용 제수 밸브		당시의 해 제조치가 있을
규격번호	2332	처분사유	때까지 규격미달